



■ 간추린 우리공사 청렴 뉴스

① 2016년도 윤리경영 종합추진계획 수립

- ▶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클린 도시철도 구현으로 2년 연속 지방공사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 2016년도 윤리경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 전년도 청렴도 평가 분석결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제도 설명회, 청렴만만 운영, 청렴퀴즈 시행,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캠페인 실시 등 조직 구성원의 윤리경영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2016년도 청렴교육

- ▶ 공사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6년도 청렴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올해는 사이버 청렴교육이수를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 청렴문화 체험교육, 분기별 자체청렴교육,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등의 실시를 통해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③ 2016년도 청렴마일리지 운영계획 수립

- ▶ 청렴활동의 자발성 향상 및 청렴도 관심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위주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청렴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 자율성을 저해하는 평가기준은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 가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④ 찾아가는 청렴제도 설명회 개최

- ▶ 청렴제도에 대한 전직원의 의견수렴 및 청렴관련 제도 설명을 위해 본사를 비롯 용산기지, 옥동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⑤ 청렴만만(滿滿) 운영

- ▶ 정례조회 시작 전 5분 동안 청렴관련 사례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동영상 상영하여 우리를 들여다보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⑥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렴 퀴즈 실시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사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퀴즈를 실시하였습니다.
- ▶ 이번 퀴즈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696명이 참여하여 80.3%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⑦ 상반기 청렴문화 체험교육 실시

- ▶ 우리 역사속 청렴 인물의 삶의 자치와 사적지를 탐방하여 청렴문화 체험으로 청렴의식 고취 및 확산을 위해 5.3일 장성군 청렴문화센터에서 상반기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 ▶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관련 교육수강, 청렴아카데미 관람, 청렴사적지(아곡 박수량 백비) 탐방, 편백숲 체험 등 일상에서 벗어나 교육과 힐링을 동시에 즐기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렴강의>



<사적지 탐방>



<편백숲 체험>

⑧ 고위직 청렴교육 수료

- ▶ 고위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의식함양을 통한 공사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공무원교육원에서 임원(사장, 경영본부장, 기술본부장) 세분이 고위직 청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 해외 청렴사례 소개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세계 70여개국에 전파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하게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빠짐없이 공개

❖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
- ▶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됨

❖ 관련사례

- ▶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음.
그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음을 항변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 역사 속 청렴인(人)



- 맹사성 -

우왕 12년(1386)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한 뒤, 1416년 이조 참판에 이어 예조 판서가 되었으며, 1419년 이조판서와 예문관 대제학이 되고, 이듬해에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1421년에는 의정부 찬성사가 되고 1427년 우의정이 되었으며, 1432년 좌의정에 오르고 1435년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으나, 나라에 중요한 정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맹사성이 정종을 모실 때는 문하부낭사로서 매일 경연을 열어 왕의 정치를 도왔으며 매일 경연에 나와서 학업에 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유교의 주축은 왕을 보위하는 유교적 학덕을 쌓은 관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상과 고위관리들의 인물평가를 중요시 여겨 이들의 천거에 의해 인재를 등용했으나, 맹사성은 이를 보완하여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매겨 보직을 주도록 하자고 청하였습니다. 태종실록의 편찬이 완료되자 세종이 한번 보고자 하였는데, 그는 “왕이 실록을 보고 고치면 반드시 후세에 이를 본받게 되어 사관이 두려워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반대하니 세종이 이에 따랐습니다.

맹사성은 청렴결백하고 공평무사한 정치로 국초의 대업을 성공시키는데 황희와 함께 공로가 지대하였습니다. 그가 거처하는 집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으며, 바깥 출입을 할 때 소타기를 좋아하였으므로 보는 사람들은 그가 재상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나라 태종이 말한 “위에는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는 이에 의하여 다스리는 관원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를 따르는 백성이 있다. 예물로 받은 비단옷 지어입고 곡간에 가득 찬 곡식으로 먹는다. 너희의 봉록은 다 백성들의 기름과 땀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은 학대하기가 쉽지만,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은 속이기 어려우니라”고 했다는 것이 맹사성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사적으로는 맹사성고택(충남 아산시 배방면 소재), 맹사성선생묘(경기도 광주시 광주읍 소재)가 있습니다.

■ 역사 속 청렴 일화



최부는 조선왕조 초기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나 처가 고을인 해남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뛰어난 학자이자, 문과에 급제하여 상당한 지위의 벼슬살이를 했던 관료 중의 한 사람이었다.



송흠은 신평 송씨로 전라도 영광(지금의 장성군 삼계면)에서 태어나 22세에 진사과에 급제하고 고관대작을 역임하였다.



같은 전라도의 이웃 고을 출신으로 조정에서 벼슬했기에 최부와 송흠은 서로 가까이 지낸 사이였다. 벼슬의 시작은 10년 가까운 차이로 최부가 대선배의 위치에 있었다.



하루는 이웃 고을에 최부가 귀향해 있음을 안 송흠이 고향 선후배의 정을 나누려는 뜻으로 선배를 찾아 말을 타고 갔다.



후배 송흠을 반갑게 맞이한 최부는 송흠에게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어떤 말을 타고 왔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송흠은 '나라에게 휴가차 오는 관리에게 내주는 말을 타고 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기 집에서 최부의 집까지는 어떤 말을 타고 왔느냐고 묻자, 같은 말을 타고 왔노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부는 화를 내면서, 공무로 타고 왔으니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괜찮으나, 고향집에서 자기집까지는 사무(私務)로 온 일인데 왜 나라의 말을 타고 왔느냐고 꾸짖으며 상경하면 나라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겠노라고 했다.



최부는 상경하여 고향 후배에 대한 정도 있고 끝내 나라에 고발하여 송흠은 처벌을 받았지만 송흠은 그때의 충고가 거울이 되어 공사(公私)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철저한 청백리가 되어 청백리의 대표적 인물로 후세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처음 시작한 벼슬살이에 철저히 버릇을 들이도록 큰 훈계를 준 최부의 청백이나, 그 훈계를 받아 임망도 하지 않고 끝까지 모범으로 삼아 세상에 이름 높은 청백리가 된 송흠의 청렴정신은 오늘의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라 여겨진다.

■ 청렴 웹툰



알려라 권익튼!

제15차 업무추진비 사적사용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공무원 A씨는 평소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으로 자린고비라는 별명은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총장을 가게 되었는데



평상시 야기던 습관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남은 업무추진비를 평소



외식은 자주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쓰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인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일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으로 쓰이는 것은 위반행위가 되니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 블로그 자료 활용

■ 행동강령 Q & A

Q&A

Q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향응수수료 행동강령 위반인지?

A 향응이란 접대뿐만 아니라 편의제공도 포함하는 개념임.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Q&A

Q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A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관내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각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단 직원상조회칙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이나 동료직원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소액(3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됨.

Q&A

Q 여러 부하 공무원들이 각출하여 새로 부임하는 과장에게 30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할 수 있는지?

A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의 선물만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관련 공무원인 부하 공무원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급자에게 주는 경우도 상급 공무원 입장에서 선물수수 허용한도를 초과하므로 받을 수 없음. .

Q&A

Q 근무시간 외 또는 휴직 중 대가를 받고 외부강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A 근무시간외 또는 휴직 중이라 할지라도 대가를 받았으면 신고대상임.

■ 청렴 상식 쌓기

청탁금지법 Yes or No

☞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처분하는 법률입니다.



음식물·선물 등 범위

얼마까지 가능하나?
허용기준은 3·5·10만원 까지

YES!

'가액 범위 안'이라는 것은 해당 금액을 포함하는 '이하'의 의미

해당 범위는 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법 적용대상

국회의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NO! NO! NO!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인사·인허가 청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며 처벌대상임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1인당 3만원이 넘을 때는
처벌 대상?

NO!

부서장이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격려 목적으로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3만원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실시

- ▶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 ▶ 일 정 : '16. 7. ~ 11.
- ▶ 대 상 : 734개 기관(중앙부처, 공직유관단체 등)
- ▶ 평가방법 : 내외부 고객 전화, 이메일, 스마트폰 조사
- ▶ 조사내용 : 내·외부 청렴도
 - 외부청렴도 : 각종계약 및 임대, 광고에 대한 투명성 등
 - 내부청렴도 : 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등
- ▶ '16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다시한번 전국 지방공사 1위를 차지 할 수 있도록 전직원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